

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(보통예금) 상품설명서

- 본인은 중국농업은행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(보통예금)을 거래함에 있어 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- 본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됨과 보호한도(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 인당 최고 1억원)에 대하여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고객확인 : 20 . . (서명/인)

이 설명서는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금증서가 교부됩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성

- 상품명 :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(보통예금)
- 상품 특징 :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금잔고 범위 내에서 수시 입출거래가 가능한 상품

2 거래 조건

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.

구분	내용	
가입자격	제한 없음.	
가입금액	제한 없음.	
기본 이자율	KRW : 연 0.1% USD : 연 0.05% CNY : 가입일 당시 당행 자금부 고시 이율	
이자계산 기준일	매년 4 월, 10 월 말일.	
가입 및 해지방법	영업점 직접 방문	
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	-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. - 예금잔액증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.	
예금 해지 시 불이익	해당 없음.	
예금자 보호 여부	해당 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 인당 "1 억원까지" 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위법계약해지권	당행이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,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 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 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.	

3 유의사항

-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당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서, 중도에 금액, 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4 기타

-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 민원센터(<https://www.fcsc.kr>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